

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 : 김 양 훈 의원

3. 개정이유

- 우리군 특성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,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분야를 세분화하고, 도서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‘112 한달음선’ 운항

지원 및 ‘자치경찰실무협의회’ 구성·운영과 관련된 사항을
신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원사업 세분화 및 ‘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’ 신설(안 제7조)
 - 112 한달음선 :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·테러·재난 등 공공
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
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
-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신설(안 제9조)

5. 관련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1. 11. ~ 2024. 1. 16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
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
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4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4조 제2항”을 “제4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지원을 해야”를 “방안마련에 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해야 한다”를 “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방법 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, 도서치안(지킴이) 보조자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
2. 실종예방·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가출인·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 사업
3.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·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 및 허가, 교통법규위반 단속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,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,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

5.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·테러·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
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(이하
“112 한달음선”이라 한다)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

6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
업

제7조제2항 중 “지원해야 한다”를 “지원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
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5호와 관련하여 112 한달음선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지급기
준 및 절차 등은 「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
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범죄예방 시설설치, 교통사고 예방, 여성청소년 등 사회
적 약자 보호를”을 “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”로, “등과”
를 “등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관
간”을 “관계기관 간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자치경찰실무협의회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
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해야
한다.

② 협의회장은 완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완도경찰
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완도군과 완도경찰

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(팀)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.

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,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자치경찰 사무”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<u>제4조 제2항</u>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완도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<u>지원을</u> 해야 한다.</p>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군수는 범죄 예방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<u>지원</u>해야 한다.</p> <p>1. <u>주민생활안전 분야(순찰·시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제4조제1항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방안 마련에 노력</u>해야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</u>할 수 있다. 1. <u>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</u></p>

설운영,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, 아동·여성·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예방, 도서치안(지킴이) 보조자 지원 등)

2. 교통 및 경비분야(교통법규 위반 단속,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·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허가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,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)

3. 수사분야(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·가정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지원, 가출인·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지원,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)

<신 설>

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방법 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, 도서치안(지킴이) 보조자 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

2. 실종예방·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가출인·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 사업

3.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·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 및 허가, 교통법규위반 단속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,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,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
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설치, 교통사고 예방,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완도군의회, 완도경찰서, 완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② 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

5.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·테러·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(이하 “112 한달음선”이라 한다)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

6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-----

--- 지원할 수 있다. 단, 제5호와 관련하여 112 한달음선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「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-----
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-----
----- 등
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과

② 관계기관 간 -----

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
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
적극 협조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 (생 략)

-----.

제9조(자치경찰실무협의회) ① 군

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
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
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
성·운영해야 한다.

② 협의회장은 완도군 자치경찰
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완도
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
이 공동으로 한다.

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
무 수행을 위하여 완도군과 완
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
주무계(팀)장으로 각 1명씩 간
사 2인을 둔다.

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
례회의를 실시하며, 임시회는
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
2)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

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의 예방
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- 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
- 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
- 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- 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- 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- 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- 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- 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- 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
- 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- 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
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